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요와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조성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구미시니어클럽》

- 사 무 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시니어클럽) 운영
-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탁사무 : 구미시니어클럽 운영 전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지정일	現운영법인
구미시니어클럽	문장로12안길 4	6명	2002.08 *보건복지부지정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전담인력 25명 별도

○ 위탁기간 : 5년(2026.1.1. ~ 2030.12.31.)

○ 소요예산 : 475백만원(도 10%, 시 90%)

※ 시설인력기준 시설장 포함 6명에서 8명으로 변경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

○ 적정성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사무명 :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동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 위탁사무 :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전반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취업지원 체계화를 통한 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민간 노인일자리 알선
-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지정일	現운영법인
구미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문장로12안길 4	4명	2007.09 *경상북도 지정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전담인력 8명 별도

○ 위탁기간 : 3년(2026.1.1. ~ 2028.12.31.)

○ 소요예산 : 222백만원(도 10%, 시 9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회 심의

○ 적정성검토결과 : 적정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부서의견

- 구미시니어클럽은 2002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구미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는 2007년 경상북도 지정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그간 별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위탁계약을 미체결 하여도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으나, 지방계약법 등 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추진이 필요하며,
- 지역 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관리 및 교육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수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조성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구미시니어클럽과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각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며, 같은 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 및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니어클럽이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수행을 담당한다면, 창출지원센터는 노동 수요와 연계한 현실적 취업 매개를 담당하여 두 기관은 지역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측으로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됨.
- 다만,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도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